**양 해 각 서**

이 양해각서는 0000년 00월 00일 한국법에 의해 설립된

  주소:

  회사명: O사     (이하 구매자라 한다)와

  법에의해 설립된

  주소:

  회사명: O사 (이하 판매자라 한다)의 사이에 체결한 것이다.

전 문

  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하고자 한다.

  양 당사자는 구매계약에 들어갈 조건에 대하여 협상하여 왔다.

  이에 양 당사자는 전기의 사항과 아래의 계약 조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1. 정 의

    Ⓐ "제품"은 O사가 O사와 구매계약하에 판매한 모니터 IC이다.

 2. 목 적

본 양해각서의 목적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배상에 관하여 당사자의 양해를 밝히기 위     함이다.

 3. 지적재산권

Ⓐ 판매자는 판매한 제품으로부터 발생하는 구매자,구매자의 자회사,협력회사 혹은 고객을 상대로 한 제3자의 특허권,저작권 혹은 영업비밀을 포함하는 모든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제기될 수 있는 모든 소송에 대하여 방어 하여야하며 모든 변호사 비용과 소송이나 분쟁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지적재산권의 침해분쟁이 일어났을 때, 판매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분쟁을  결하여야 한다. 단 구매자의 주문 설계SPEC에 기인하여 특허 침해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예외로 한다.

       그와 관련된 분쟁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다.

       (Ⅰ) 판매자가 공급한 제품의 원인으로 인한 특허 침해분쟁에 있어서는 판매자가             책임이 있다.

       (Ⅱ) 구매자가 주문하여 제작한 설계SPEC에 기인하여 발생한 침해분쟁에 있어서             는 구매자에 책임이 있다.

Ⓒ 판매자가 제공한 제품과 구매자에 의해 설계된 소프트웨어,주변회로 및 다른부분 (이하 주변회로등이라 한다)이 함께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침해의 분쟁이 있는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는 다음과 같이 각자의 분배된 책임과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Ⅰ) 판매자는 판매자에 의해 공급된 제품에 대한 책임이 있다.

    (Ⅱ) 구매자는 주변회로등에 책임이 있다.

    책임과 비용 분담은 제품공급시의 제품과 주변회로등의 가격비율에 의해 정한다.

Ⓓ 판매자는 구매자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License를 획득하거나 구매자의 협력을  얻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제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판매자가 상기의 License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제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가 비용의 발생이 요구되는 경우 제품의 가격에 대한 재협상을 한다. 구매자는  판매자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협력을 제공해야 한다. 소송과 관련하여 구매자에  발생한 비용과 제 3자에게 지급한 손실비용은 판매자의 비용으로 한다.

   본 양해 각서에 의한 판매자의 책임은 이 계약에 준하여 제품에 대해 구매자가  지급한 총액을 넘을 수 없다.

      이의 증명을 위하여, 아래의 양 당사자는 상기의 최초로 기재된 날에 각자의 권한       이 있는 자에 의해 본 양해각서가 이행토록 함.

    -------------------------                 -----------------------

     성 명:                                     성 명:

     직 위:                                     직 위: